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3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 박준태·박충권·이헌승

배준영 · 최수진 · 유상범

김성원 · 김선교 · 김용태

주진우 · 강선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다만 부칙에서 정한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이처럼 판사 임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일정한 재직연수를 갖추도록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법원조직법」이 2011년 개정되어 2013년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었음. 이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었음.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에 따라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판사로 임용되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토대 가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한 처우나 근무여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뒷받침할 각종 재판제도와 절차가 변화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수의 재판연구원 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더구나 우리나라 판사의 업무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고,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 서 재판지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라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가 상향되어 법조일원화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법원은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를 충원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중요사건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처리하는 지 방법원 합의부에 배치할 배석판사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 성이 있음. 또한 판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사건처리의 효 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결국 재판이 지연되고 충실한 심리가 어렵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여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치할 실력과 열정을 갖춘 역량 있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와 동시에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라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변호사등의 직에 있던 사람도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판사임용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중 "10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후 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재 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임용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실시한다.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42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 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② ----3년 이상----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 -----. <후단 삭제> 다만, 2 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재 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 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임 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 용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실시 다. <단서 신설>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 <신 설> 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 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 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 <삭 제> 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

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 한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건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